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16호(號) 1916(大正 5)년 8월 21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3호(號)

1913(大正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5호(號) 중(中) 조선철도(朝鮮鐵道)의 역(驛) 출발[發] 여객운임(旅客運賃)은 1916(大正 5)년 9월 1일부터 당분간(當分間) 그 적용(適用)을 정지(停止)하고, 정지기간은 하기[左記] 운임(運賃)에 의거한다.

1916(大正 5)년 8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구 간(區間)	단 위(單位)	급행열차				보통열차					
		1 등		2 등		1 등		2 등		3 등	
		대인	소아	대인	소아	대인	소아	대인	소아	대인	소아
부산(釜山)—장춘(長春) 간(間)	엔(圓)	56.15	28.17	39.76	19.99	51.15	25.67	30.27	15.24	18.05	9.13
남대문(南大門)—장춘 간	엔(圓)	42.65	21.42	30.31	15.26	37.65	18.92	20.82	10.51	12.91	6.55
평양(平壤)—창춘 간	엔(圓)	34.40	17.30	23.54	11.88	29.40	14.80	15.05	7.63	9.61	4.90
장춘—만주리(滿洲里) 간	루블[留·RUB]	66.70	41.70	41.70	24.98	45.45	27.80	27.80	16.65	16.65	8.35
장춘—치치하얼(Qiqihar) 간	루블[留·RUB]	29.20	18.30	18.30	10.95	19.45	12.20	12.20	7.30	7.30	3.70
장춘—하얼빈(合爾濱) 간	루블[留·RUB]	14.43	8.95	8.93	5.33	9.60	5.95	5.95	3.55	3.55	1.80
장춘—하바롭스크(Khabarovsk) 간	루블[留·RUB]					48.45	23.55	29.85	14.10	18.60	7.51
장춘—블라디보스토크(浦鹽斯德·Vladivostok) 간	루블[留·RUB]	58.23	31.73	36.39	19.06	37.90	20.92	23.52	12.52	14.38	6.44

일(一), 본 표(本表) 엔화(圓貨) 운임(運賃) 중에는 승차권 책자(乘車券冊子) 제작비[調製費]로서 20전(錢)을 포함한다.

일(一), 본 표(本表) 중(中) 루블[留·RUB]화(貨) 운임(運賃)은 승차권 책자(乘車券冊子) 발매(發賣) 때 소요구간(所要區間)의 것을 수시(隨時)로 소정(所定)의 환산률(換算率)에 의하여 엔화(圓貨)로 환산(換算)하여 수령(受領)해야 한다.

일(一), 조선철도(朝鮮鐵道) 및 남만주철도(南滿洲鐵道)에서는 여객(旅客)이 침대(寢臺) 또는 좌석(座席)의 사용을 위해 당해(當該) 철도가 정(定)한 요금(料金)을 지불할 것을 요(要)한다.

일(一), 동청(東淸) 및 우수리(烏蘇里[Ussuri]) 철도(鐵道)에서 급행열차(急行列車)로 여행하는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(萬國寢臺車會社)의 임률규칙(賃率規則)에 의하여 추가요금(追加料金)을 지불할 것을 요(要)한다.